

## 경북칼럼

### 유급제 광역의원들의 검직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지방의원 유급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광역의원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검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지방의원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검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포괄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또 지방의원의 검직여부에 대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검직사실을 제대로 공개치 않거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무보수 검직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가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광주 등 11개 광역 지방의회 의원 534명을 대상으로 검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56.6%인 301명이 의원직을 제외한 직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문  
대구소리 공동대표

필자가 거주하는 대구시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29명 중 22명(63%)이 검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별(중복 포함)로 보면 건설·환경·지도사 2명, 상업·서비스업 5명, 교육 2명, 새마을금고 1명, 약사 4명, 법무사 1명, 정당인 10명, 무직(정년퇴직) 5명 등이다.

이 같은 검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의원이 검직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 11개 광역의회 56.6% 검직

#### 영리 활동에 지방자치 위협

지자체에 대한 감사 등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의원은 그 동안 명예직이라는 신분 특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검직이 원칙적으로 허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동료 의원들까지 나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활동을 해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광역시의회가 계약직 4명 최종 선발

을 했다는 보도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입법실무 및 정책 연구업무를 담당할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다급) 4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는 지방의원이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에 필요한 당위성을 주장 할때만 정면배치하는 반대사항으로 국민과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월급도 필요없다 표만달라고 외치다 유급제로 유급제에서 의원 입법보좌관 신설과 의원 개개인방 설치로 시민의 혈세를 하는일 없이 소모하는 능력없고 대선 줄서기의 전형적 작태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선견적 안목을 가진 분들은 "지방의원 검직이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지자체 감사 수행 시 직무와 검직 간에 이해충돌을 비롯해 의정활동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며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영리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